

환경부 고시 제 호

「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환경부고시 제2022-106호, 2022.10.1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3년 월 일

환경부장관

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위치정보 전송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 중 임시차량의 경우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 1)

나.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(수집·운반업은 제외)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함(부칙 제2조)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1]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(제5조 및 제6조 관련)</p> <p>비고</p> <p>1) (생 략)</p> <p>2) <u>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자 차량으로 운반시 운전자 휴대전화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용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환경부고시 제2022-106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</p> <p>제2조(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한 적용례) <u>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로서 제1조 각 호 중 두 개 이상의 폐기물을 동시에 영업대상으로 하는 경우 적용시기가 가장 늦은 폐기물의 적용시기를 따른다.</u></p>	<p>[별표1]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(제5조 및 제6조 관련)</p> <p>비고</p> <p>1) (현행과 같음)</p> <p>2) 1)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차량용 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가) <u>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자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나) <u>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임시차량으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</u></p> <p>환경부고시 제2022-106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</p> <p>제2조(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한 적용례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에 따라 <u>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(수집·운반업은 제외한다)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용시기는 제1조제3호를 따른다.</u></p>